

2017. 06. 09. (금) 16:00~18:00

교남소망의집 자원봉사자실

임시이사회록



사회복지
법인

교 남 재 단

제17-03회 임시이사회 회의록

◇ 개최일시 : 2017년 06월 09일(금) 16:00~18:00

◇ 개최장소 : 교남소망의집 자원봉사자실

◇ 참석인원 : 이사장 채주원 외 7명

- 참석임원 : 이사 5명(채주원, 황규인, 이석무, 서상윤, 이판기)

감사 1명(박창석)

- 배석자 : 2명(권나영, 김행민)

◇ 개회선언

황규인 상임이사가 이사 7명 중 5명이 참석하였음을 보고하고, 이판기 참석하였으므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니 의장이 개회를 선언한다.

◇ 이사장 인사

채주원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 감사 인사를 하고, 금일 상정된 안건 심의를 주문하다.

◇ 전차회의록 처리

황규인 상임이사가 첨부된 내용과 같이 전차회의록을 간단명료하게 낭독하니, 이석무 이사가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이판기 이사의 재청으로 의장이 전차회의록 처리가 되었음을 선언하다.

◇ 보고사항

보고 1 열림ilter 카페 사업 종료 보고

의장이 열림ilter 카페 사업 종료 보고를 주문하니, 권나영 열림ilter 원장이 자료집 p.19를 참조하여 열림ilter 카페 사업의 진행과정과 종료 사유에 대해 보고하다. 열림ilter의 카페는 2006년 소망샘카페를 시작으로, 2009년 (주)이랜드월드와 더카페 밀알3호점 계약을 맺고 현재까지 운영해왔으며, 2006년부터 현재까지 11년 간 람원교회의 지원으로 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설명하다. 그러나 2017년 1월 교회 측의 사정으로 공간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게 되어 더카페 밀알3호점 재계약을 앞둔 시점에서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사업을 종료하기로 해서 2017년 2월 사업 종료, 2017년 3월 집기류 처분(교남어유지동산으로 이전)을 실시한 후 현재 폐업신고를 마쳤음을 보고하다.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서상운 이사는 개인적으로 람원교회의 장로로서 교남에게 공간을 더 이상 빌려주지 못하고 카페 문을 닫게 한 일이 매우 마음 아프다고 표현하였으며, 교회 내부적으로 공간사용 조정을 실시하여 현재 지하실을 사용하고 있는 소망부(발달장애인 예배부서)가 1층으로 예배장소를 옮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다. 황규인 상임이사가 11년 간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람원교회에 감사하며 근로장애인에게도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답하였고, 권나영 원장이 카페에서 일하던 근로장애인들 모두 열림ilter로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해서 갑자기 사라진 일자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없다고 덧붙이다. 더 이상의 추가의견이나 질문이 없어 서상운 이사 동의, 이판기 이사 재청으로 열림ilter 카페 사업 종료 보고를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였음을 의장이 선언하다.

◇ 안전심의

- 제1호 의안 2017년도 교남재단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2호 의안 2017년도 교남소망의집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3호 의안 2017년도 교남시냇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4호 의안 2017년도 교남어유지동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5호 의안 2017년도 열림ilter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6호 의안 2017년도 교남공동생활가정1~6호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7호 의안 2017년도 늘푸른마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 제8호 의안 2017년도 교남발달지원센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장이 다음 안전의 심의를 주문하니, 황규인 상임이사가 자료집 p.29의 교남재단 및 산하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여 2017년도 교남재단과 산하기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과 사유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하다. 교남재단 및 산하기관의 2017년도 본예산은 8,366,841천원이었으며,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은 234,012천원 증가한 8,600,853천원 이었다.

<교남재단 및 산하기관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표>

(단위: 천원)

의안번호	기관명	기예산(A)	추경안(B)	증감액(B-A)	증감비(%)
제1호	교남재단	598,329	601,085	2,756	0.46
제2호	교남 소망의집	2,848,691	2,975,127	126,436	4.4
제3호	교남 시냇가	1,581,834	1,615,353	33,519	2.1
제4호	교남 어유지동산	1,646,113	1,565,766	△80,347	△4.9
제5호	열림ilter	924,238	1,060,445	136,207	14.7
제6호	교남공동 생활가정 1~6호	449,688	459,542	9,854	2.2
제7호	늘푸른마을	169,716	165,645	△4,071	△2.4
제8호	교남발달 지원센터	148,232	157,890	9,658	6.5
합계		8,366,841	8,600,853	234,012	2.8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석무 이사 동의, 이판기 이사 재청으로 의장이 제1호~제8호 의안인 2017년도 교남재단 및 산하기관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됨을 선언하다.

제9호 의안 교남재단 감사 중임(안) 심의

의장이 다음 안건의 심의를 주문하니, 황규인 상임이사가 회의자료 p.231를 참조하여 교남재단 감사 중임(안)에 대해 보고하다. 교남재단 정관 제15조, 제16조, 제1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에 의거하여 감사 2인이 우리 재단에 선임되어 있어야 하나, 현재 재직하고 있는 심창호 감사의 임기만료일이 2017년 8월 23일로 토래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교남재단 감사 중임(안)에 대한 이사회의 재가를 얻고자 함을 설명하다. 이에 이석무 이사가 심창호 감사의 의사를 확인하니, 황규인 상임이사가 심창호 감사 본인의 동의의사는 확인하였음을 답하다. 더 이상의 추가의견이나 질문사항이 없어 의장이 본 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석무 이사 동의, 서상윤 이사 재청으로 의장이 제9호 의안인 교남재단 감사 중임(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언하다.

- 아 래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현재임기	중임임기	임기
감사	심창호	660118-1*****	2015.08.23.~ 2017.08.22.	2017.08.23.~ 2019.08.22.	2년

제10호 의안 교남학교 교직원 임용제청(안) 심의

의장이 다음 안건의 심의를 주문하니, 황규인 상임이사가 회의자료 p.235를 참조하여 교남학교 교직원 임용제청(안)에 대해 보고하다.

교남학교 교직원 임용제청(안)

○ 교원 복직 제청

소 속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당과목	사 유	기 간	복직일	비고
교남학교	교사	최혜인	840228-2*****	특수 (중등) 직업	육아휴직 기간만료	2015.9.1. -2017.8.31.	2017.9.1.	첫째

○ 교원 휴직 제청

소속	직위	성명	담당 과목	주민등록 번호	휴직사유	기간	제청 일자	후임 충원 방법	NEIS 입력 유무	비고
교남 학교	교사	최혜인	특수 (중등) 직업	840228 -2*****	육아휴직 (산전휴직)	2017.9.1. -2017.9.30.	2017. 5.31.	기간제 교사	(추후 입력)	둘째 임신

의장이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석무 이사 동의, 이판기 이사 재청으로 의장이 제10호 의안인 교남학교 교직원 임용제청(안)이 가결됨을 선언하다.

제11호 의안 교남시냇가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적립 계획(안) 심의

의장이 다음 안건의 심의를 주문하니, 황규인 상임이사가 회의자료 p.239를 참조하여 교남시냇가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적립 계획(안)에 대해 보고하다. 의장이 본 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석무 이사가 계획대로 3년 안에 실행완료 가능할지, 그리고 사업시행기간에 정해진 것이 있는지 질문하다. 황규인 상임이사가 본 사업은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정해진 시행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며, 현재로서는 3년 안에 추진할 계획이고 그 이상은 관련 법령에 의거 증여세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오랜 기간 준비하기는 어려움을 설명하다. 채주원 이사장이 교남시냇가에서 연 1천만 원 이상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니, 후원금 개발 및 기금마련행사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임을 황규인 상임이사가 답하다. 만약 본 계획을 철회할 경우 적립된 기금은 어떻게 되는지 이석무 이사가 질문하였고, 황규인 상임이사가 SH나 LH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반납조치하고, 후원금 등은 이사회와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사용가능함을 설명하다. 이에 의장이 본 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석무 이사 동의, 서상윤 이사 재청으로 의장이 제11호 의안인 교남시냇가 특정목적사업 적립금 적립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언하다.

제12호 의안 열림ilter 운영수익금 활용계획(안) 심의

의장이 다음 안건의 심의를 주문하니, 권나영 열림ilter 원장이 회의자료 p.245를 참조하여 열림ilter 운영수익금 활용계획(안)에 대해 보고하다.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 일부를 종사자 인건비 및 일반적인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자 함

을 보고하니, 이석무 이사가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직원의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기관의 운영에 당연한 일인데 본 의안이 이사회회의에 상정되어야 할 안전인지를 확인하였고, 관련 지침에 의거 이사회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가능함을 권나영 원장이 답하다. 이에 의장이 본 의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석무 이사 동의, 이판기 이사 재청으로 의장이 제12호 의안인 열람일터 운영수익금 활용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언하다.

◇ 폐 회

채주원 의장이 교남재단과 산하기관의 발전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폐회를 선언하니 18:00이었다.

2017년 06월 09일

대표이사 채 주 원 (인)

상임이사 황 규 인 (인)

이 사 이 석 무 (인)

이 사 서 상 윤 (인)

이 사 이 판 기 (인)